

장기요양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대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대상자

■ 계약기간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당사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내용

1.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세면도움, 구강관리, 샤워, 머리감기)몸단장,머리손질,체위변경, 이동도움,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기저귀교체) 등
2. 가사활동지원 : 취사, 침실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활동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5. 인지지원활동 : 인지지원프로그램 (회상훈련,기억력향상활동) 잔존능력유지 및 증진,일상생활함께하기
6. 상담 및 교육 : 수급자 일상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매월 방문시)
7. 수급자 및 보호자 교육(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8. 자원연계 : 저소득 홀몸 노인의 후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연계

■ 월 이용료

(단위: 원)

월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단위: 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급여비용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강경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계약자 의무

①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요양보호사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요양보호사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제공기관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대상자(또는 제공기관)의 요청에 협조

③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요양보호사에게 통보
4. 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요양보호사에게 통보
5. 기타 요양보호사의 협조요청 이행

■ 계약해지 요건

**① 대상자(또는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제공기관)의 동의
없이 요양보호사의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요양보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이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6.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의 해지

- ① 대상자(또는 제공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무)선으로 할 수 있다.
- ② 요양보호사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와 제공기관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대상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④ 요양보호사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